

환자기본법안(대안)
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이 법은 환자가 신체적·정신적·사회적으로 건강한 삶을 회복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(안 제1조).
- 보건복지부장관은 환자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·시행하도록 하고, 보건복지부장관과 시·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도록 함(안 제8조 및 제9조).
- 보건복지부장관은 환자의 권리 증진을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하며,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환자정책의 수립·시행 및 지원을 위한 연구사업을 수행하여야 함(안 제11조 및 제13조).
- 환자의 건강 보호, 권리 증진에 관한 기본적인 정책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환자정책위원회를 둠(안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).
-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·도지사는 환자정책 결정 과정에 환자 또는 환자단체가 참여하여 다양한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여야 함(안 제20조).
-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은 환자안전을 위하여 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·운영하고,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두도록 함(안 제26조).

조 및 제28조).

-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수술 등으로 환자가 사망하는 등의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함(안 제30조).
- 환자안전사고 중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앙 환자안전센터가 해당 사고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, 의료기관의 장에게 개선활동의 수립·이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, 조사 과정에서 수집된 자료와 진술 및 조사 결과는 재판상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함(안 제31조 및 제32조).
-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조사·연구 및 공유를 위하여 환자안전사고 보고·학습시스템을 구축·운영하도록 하고, 환자안전사고 보고의 비밀보장을 위하여 관련 정보를 공개할 수 없도록 하고, 환자안전사고 보고를 이유로 불리한 조치를 할 수 없도록 함(안 제34조 및 제35조).

II. 검토의견

- 제정안에 대하여 체계와 자구를 검토한 결과, 법문의 표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이며, 자세한 수정사항은 주서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Ⅲ. 관계기관 의견

- 법무부는 안 제31조제3항은 환자안전사고 조사과정에서 수집된 자료 등은 환자안전 향상과 재발 방지를 위한 목적에 한하여 활용되고, 해당 사고와 관련한 민·형사상 재판에서 의료인 등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, ① “환자안전 향상과 재발 방지를 위한 목적”은 추상적·포괄적 개념으로 안전사고로 인한 형사 처벌 유무를 수사·재판하여 징벌하는 것도 궁극적으로 이 목적에 해당하므로 해석의 재량여지를 과도하게 확장할 여지가 있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됨. ② 「형사소송법」 제308조는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고 하여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특정한 진술 등의 증거능력을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입법은 체계상 맞지 않고 입법례도 찾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.

- 이에 보건복지부는 다음과 같이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음.

상임위 의결안	보건복지부 수정의견
제31조(환자안전사고의 조사) ③ 제1항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수집된 자료, 진술 및 조사 결과는 환자안전 향상과 재발 방지를 위한 목적에 한하여 활용되며, 해당 사고와 관련한 <u>민·형사상 재판에서 보건의료기관 또는 보건의료인의 책임에 대한 증거로 할 수 없다.</u>	제31조(환자안전사고의 조사) ③ 제1항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수집된 자료, 진술 및 조사 결과는 환자안전 향상과 재발 방지를 위한 목적에 한하여 활용된다.

- 법무부는 보건복지부의 수정의견은 수용하되, 환자안전사고를 유발한 의료인의 법적 책임을 가리는 수사 및 재판절차는 궁극적으로

환자안전 향상과 재발 방지가 목적인 것인바, 수정안 제31조제3항을 근거로 환자안전사고 조사결과의 증거능력 또는 증명력이 제한된다는 해석은 본 법의 입법 취지에 반하므로 타당하지 않다는 추가의견을 제시하였음.

(전문위원 박 혜 진)